

 Korea Zinc Co	경 영 기 본	분류번호	KZA-0108
	감 사 위 원 회 운 영 규 정	시행일자	2018.11.01
		개정번호	1

0.1 목차

1. 목적 및 적용범위
2. 용어 정의
3. 직무와 권한
4. 위원회의 구성
5. 위원장
6. 위원회
7. 소집권자
8. 소집절차
9. 결의방법
10. 권한
11. 의무
12. 내부회계관리 및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 평가의무
13. 외부감사인의 선정 등
14.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15. 의사록
16. 간사
17. 기록

0.2 관련규정

- | | |
|----------------|------------|
| 1. 정관 | (KZA-0101) |
| 2. 이사회 규정 | (KZA-0107) |
| 3. 규정작성 및 관리규정 | (KZB-0106) |

규정명	감사위원회운영규정	분류번호	KZA - 0108	개정번호	1
-----	-----------	------	------------	------	---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용어 정의

2.1 이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사외이사 및 비상근이사 포함)

2.2 사외이사

주주총회에서 증권거래법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2.3 내부통제제도

기업운영의 효율성·효과성 확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관련 법규·정책의 준수 등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

2.4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조직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

2.5 내부회계관리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

2.6 집행임원

상법 제408조의2 내지 제408조의9에서 정하는 자

3. 직부와 권한

3.1 감사위원회

- 회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
-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 외부감사인 선정
-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규정명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분류번호	KZA - 0108	개정번호	1
-----	-------------	------	------------	------	---

3.2 위원장

- 감사위원회의 소집 결정
- 회의 주재

3.3 간사

- 감사위원회 소집통지
- 감사위원회 의사록의 작성 유지

4. 위원회의 구성

- 4.1 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4.2 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4.3 위원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4.4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4.2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4.3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

5. 위원장

- 5.1 위원회는 9.(결의방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5.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5.3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회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 개최한다.
- 정기위원회 : 년 2회
 - 임시위원회 :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규정명	감사위원회운영규정	분류번호	KZA - 0108	개정번호	1
-----	-----------	------	------------	------	---

7. 소집권자

7.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7.2 각 위원은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8. 소집절차

8.1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8.2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전 8.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9. 결의방법

9.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감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9.2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9.3 전 9.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권한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업무감사권

위원회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 등이 행한 업무진행이 법령 또는 정관, 회계처리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했는지 감사할 수 있다.

2)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규정명	감사위원회운영규정	분류번호	KZA - 0108	개정번호	1
-----	-----------	------	------------	------	---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 및 직원에 대해 회사내 모든 정보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3) 이사보고의 수령권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4)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모회사의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을시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5)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 각종의 소권

위원회는 총회결의 취소, 신주발행 무효, 감사 무효, 합병 무효 등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7)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8)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9)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

10)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에 대한 권한

11. 의무

1) 위원회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의무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

규정명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분류번호	KZA - 0108	개정번호	1
-----	-------------	------	------------	------	---

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3) 이사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감사록의 작성 의무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5)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의무

위원회는 주주총회 6주전에 이사로부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등을 제출받고 이사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 1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여된 사항을 수행할 의무

12. 내부회계관리 및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 평가의무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목이 위원회의 평가보고서임을 기술

2) 수신인이 주주 및 이사회임을 기술

3) 평가기준일에 평가대상기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4) 경영진이 선택한 내부통제체계와 이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위원회는 관리 감독책임이 있다는 사실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추가적인 검토절차를 수행한 경우 해당 사실

규정명	감사위원회운영규정	분류번호	KZA - 0108	개정번호	1
-----	-----------	------	------------	------	---

- 6)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 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 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 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평가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 10)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론
- 11)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
- 12)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또는 이미 수행중인 절차
- 13) 보고서 일자
- 14) 감사위원의 서명 날인
- 15) 기타
대표이사의 보고내용 요약(평가 결론, 유의한 미비점, 시정조치 및 향후 계획 등)

13. 외부감사인의 선정 등

- 1)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미리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 (3) 전기 외부감사인과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의 사항

규정명	감사위원회운영규정	분류번호	KZA - 0108	개정번호	1
-----	-----------	------	------------	------	---

- 가) 전기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 나) 전기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역
- 다) 해당 사업연도의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 라)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4)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1) 3)의 (1)~(3)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5)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평가를 하여 평가한 내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4.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 1)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의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15. 의사록

- 14.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14.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6. 간사

- 15.1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 15.2 간사는 총무담당임원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규정명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분류번호	KZA - 0108	개정번호	1
-----	-------------	------	------------	------	---

17. 기록

본 규정 관련기록들은 `문서 및 기록 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으로 관리하며 다음과 같이 유지 보관한다.

기 록 명	보관기간	보관책임자
감사위원회 의사록	영구	총무담당임원
감사위원회 소집청구서	3	총무담당임원
감사위원회 소집통지서	3	총무담당임원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제정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